

협동조합의 해산

2021년 협동조합 전문상시상담기관(법무·법률) 법무법인 더함

「협동조합 기본법」(이하 법령 생략)은 협동조합의 법인격 소멸을 위한 해산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협동조합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물론, 협동조합 간 흡수합병 시의 피흡수 협동조합, 협동조합이 소멸분할하는 경우의 소멸 협동조합 역시 그 절차에 따라 해산하게 됩니다.

그렇다면 협동조합이 해산하기 위하여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, 그에 따라 해산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? 협동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쟁점을 7월의 주요 이슈사항으로 소개합니다.

1. 협동조합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?

- 통상의 경우

해산총회를 개최한 뒤, 청산인의 취임 및 해산 의결로 해산절차가 시작됩니다(제58조). 청산인은 취임 후 14일 내 설립신고를 한 시·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한 뒤(제57조 제2항), 해산일로부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는 14일, 지사무소 소재지에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를 경료하여야 합니다(제66, 67조).

그 외에 청산인은 재산상태의 조사 및 재산처분 방법에 관한 총회 승인(제58조 제2·4항), 잔여재산의 처리(제59조 제1항) 등 청산사무를 종결한 뒤,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(제58조 제3·4항). 이후 청산종결등기를 통해 협동조합의 해산은 완전히 종료됩니다(제68조).

- 해산 간주의 경우

해산총회 개최가 어려운 등 통상의 해산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라면, 제57조의2에 따라 휴면협동조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본점 관할 법원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에 대하여 해산간주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, ① 법원행정처장이 해당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소재지 관할 법원에 영업 계속 신고할 수 있음을 관보 공고(제57조의2 제1항)한 뒤 ② 법원에서 협동조합에 최후등기 통지서를 발송(제57조의2 제3항)하고, ③ 그로부터 2개월 내 협동조합 계속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그 협동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(제57조의2 제2항). ④ 그리고 해산 간주일로부터 3년 내 협동조합 계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청산종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(제57조의2 제5항).

2. 미등기 협동조합도 해산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?

지난 '2021년 6월 주요이슈사항'에서 설립 중 사단에 대하여는 성립이 완성된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.

이는 협동조합의 해산절차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으므로, 미등기 협동조합이 설립등기를 할 의사가 없고 협동조합으로서 활동할 의사도 없어 해산하고자 한다면 협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해산신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. 다만 설립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협동조합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(제119조 제3항 제1호).